

# 2025 이공분야 학술연구혁신지원사업

## [미래도전연구지원, 글로컬R&D지원, 보호연구] 신규과제 신청요강

- ▶ 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혁신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등 세부 내용은 신청요강 및 별첨(매뉴얼) 자료 참조

2025. 4.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문의절차 및 문의처

###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신청요강·FAQ)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FAQ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공고자료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FAQ 내용을 숙지



주관연구기관에 먼저 문의

공고내용을 숙지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부서에 문의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 □ 신청 및 접수 시스템 관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 IRIS 콜센터 ☎ 1877-2041, ☎ 042-862-1500

- IRIS Q&A :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 IRIS시스템 장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 불가합니다.

### □ 사업 및 평가 관련 : 한국연구재단 문의

#### ○ 사업 관련: 사업 내용, 지원자격 등

-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 869-6619, 6622, 6623

#### ○ 평가 관련: 선정평가 절차·방법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 분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미래도전연구지원	6554	6537	6055	6541	6575
글로컬R&D지원	6559	6533	6059	6541	6575
보호연구	6559	6537	6059	6541	6565

##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①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혁신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

-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2025.5.19(월) 9:00:00 ~ 2025.5.28(수)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2025.5.19(월) 9:00:00 ~ 2025.5.30(금)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5.5.28. 18:00:00)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 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신청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신청 기간 내 미접수시 별도 구제 불가

### ② ‘온라인신청매뉴얼’은 신청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 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2025년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법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④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 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KRI 연구자정보 데이터의 정보이관 동의 후 최초 1회만 이관되므로, 이관 이후의 연구자 정보는 IRIS내 NRI를 통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매뉴얼1-2. 03-2참고]  
※ KRI 연구자정보 이관 동의 후 익일에 NRI에 KRI정보가 반영됩니다. 연구자정보 이관 및 NRI 연구자정보 수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과제 신청 이전에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 <00대학교>로 과제 신청 중 기관대표자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IRIS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기관] 탭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항목에서 [지원인력추가]를 통해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자를 <00대학교> 대표자로 등록 가능
- 승인권한은 본교(00대학교) 및 산학협력단(00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한 과제 모두 승인 가능
-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 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I 사업 개요

## 1 지원근거 및 사업목적

###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 사업목적

- 학문발전을 위하여 다양성을 토대로 수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자 및 학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세부 사업명	사업목적
미래도전 연구지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도전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하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다학제 연구 지원
글로컬 R&D지원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비수도권 대학 소속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보호연구	기초학문의 다양성 및 균형성을 유지하고, 국가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

## 2 지원 내용 및 선정 규모

구분	미래도전연구지원	글로컬R&D지원	보호연구
지원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		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 중 보호육성 필요 12개*분야
연구형태	개인연구(공동) ※ 2인 공동연구		개인연구(단독/공동) ※ 단독연구 또는 2인 공동연구
선정과제수	50개 내외	119개 내외	10개 내외
연구기간	5년(3+2)	3년	5년(3+2)
연간 연구비 (간접비포함)	200백만원 이내	180백만원 이내	(공동) 300백만원 이내 (단독) 100백만원  ※ 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고시 비율 적용 ※ 학문후속세대 인건비를 20% 이상 편성 ※(글로컬R&D지원) 국제 협업 연구 시 연 5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연구개시일		2025년 9월 1일	
총 연구기간	2025.9.1.~2030.8.31. (60개월)	2025.9.1.~2028.8.31. (36개월)	2025.9.1. ~ 2030.8.31. (60개월)
1차년도 연구기간		2025.9.1. ~ 2026.2.28. (6개월) ※ 1차년도 연구비는 6개월분 지급	

\* 2025년도 보호분야(12개)에 한해 신청 가능(붙임1. 보호연구 학문분야 안내 참고\_23p)

## II 지원자격 및 제한사항

### 1 신청 및 참여자격

세부 사업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자격
미래도전 연구지원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제30조 및 그 밖에 법률로 설립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글로컬R&D 지원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제30조 및 그 밖에 법률로 설립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중 지역대학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4대 과기원, POSTEC 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의 전임 · 비전임 교원 및 박사후연구원
보호연구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제30조 및 그 밖에 법률로 설립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 연구책임자와 다른 기관(대학) 소속의 경우에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가능

※ 과제 신청 및 참여 자격은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반드시 충족

#### (공통) 과제 참여연구자 구성 유의사항

- 관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과제 수행 시 학문후속세대 필수 참여
  - ※ 당해연도 연구비(간접비 포함)의 최소 20%를 학문후속세대(학부생, 석·박사과정생,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로 편성

#### (미래도전연구지원사업) 과제참여 유의사항

- 공동연구진으로 異種 학문분야(재단 CRB분야) 연구자 1인 구성 필수
  - ※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가 동일 CRB 분야로 신청한 경우 요건검토에서 과제탈락 처리

#### (글로컬R&D지원사업) 글로벌 공동연구 신청 관련 사항

- 글로벌 공동연구 신청 시, 전체 연구비에 연 50백만원 이내 추가 지급
  - ※ 추가 지원하는 글로벌 공동연구비는 접수 시 신청 금액을 제출하며 추후 금액 변동 불가
  - ※ 글로벌 공동연구비는 학문후속세대 인건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
- 연구자가 아래 제시된 국제공동연구 유형 중 자율 선택(1개 이상)

### < 국제공동연구 유형 >

유형	수행 방법
연구과제 참여 및 인력교류	해외 연구기관의 우수연구자가 일반연구원으로 참여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원(박사급) 국내 유치(해외 연구자 국내 초빙 등)
	해외 학생/연구원의 국내 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참여(4주 이상/연)
	참여(공동/일반) 연구원 중 해외 파견(교환교수, 초빙, 파견, 연수 등)
	참여(신진연구인력/국내 학생 및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교수) 연구원의 해외 연구기관 방문 및 연구참여(4주 이상/연)
초청/방문연구	연구책임자의 상호 현장 방문(2주 이상/연)
연구시설·장비 활용	국내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특수 또는 고가장비 활용 중심)
	해외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특수 또는 고가장비 활용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 공동 학술대회/컨퍼런스/심포지엄/세미나/워크숍 등 국내 개최
	국제 공동 학술대회/컨퍼런스/심포지엄/세미나/워크숍 등 해외 개최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국내·외연구기관에 거점연구실 설치/운영
추가 제시	기타(연구과제별 가능한 글로벌 공동연구 방법 작성)

- 공동연구내용 및 일정, 방법, 사례, 성과물 창출 계획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확정

※ 아래 성과물 유형 중 1개 이상 제시(복수 선택 가능)

### < 성과물 유형 >

유형	방법
논문	공동저술논문 게재 정보 (국내·국외 연구자가 주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로 동시에 참여한 국제공동논문 게재)
특허	국제공동특허 출원 및 등록
글로벌 인력교류	해외 파견 국내연구자 수/기간, 신진연구인력 파견자 수/기간
글로벌 인력양성	방문연구 학생의 학위배출 실적(석사/박사), 연관기업 취업자 수
해외연구자 유치	국내유치 해외 연구자 수, 국내유치 해외연구자 유치기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제정보교류(학술대회/컨퍼런스/심포지엄/세미나 등) 개최실적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국내/외 기술이전
국제공동연구협약	국제공동연구협약(MoU, LOI, Agreement 등) 체결건수, 체결액, 국가 수
포상	공동연구 실적에 따른 국내외 정부 및 학회 포상
저서	국제공동저서 (챕터별 참여 포함)
추가 제시	기타(연구과제별 가능한 성과물 유형 작성) - (예시) 주요 학술지 편집위원 및 Top-class Journal Review board 등

## 2 신청 및 참여 제한 사항

※ 연구책임자가 신청제한 사항 위반 발견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정부R&D 공통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연구개시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자는 과제 선정 제외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4호, 제7호에 따라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舊 일반연구자지원사업)과 연평균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25년~과제 종료 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내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과제 및 장비 구축 과제(공동연구 활성화 과제는 3책5공 적용)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미포함

## **[2025년도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적용]**

- (기본 원칙)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 교육부 · 과기정통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

- ▶ 학술연구혁신지원(창의도전연구기반,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보호연구, 학제간융합연구, 미래도전연구, 글로컬R&D), 학문후속세대지원(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박사후국내·외연수, Post-Doc. 성장형 연구지원), 글로벌리더연구,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국내, 국외연수),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생애기본(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이공학 개인기초(기본연구)

### **예 외**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연차/단계종료 아님)하는 경우

- (신규 신청 제한) 2025년도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기 신청한 사업의 선정결과가 확정되어 미선정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개인 단위 기초연구사업을 기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개인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단,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최종 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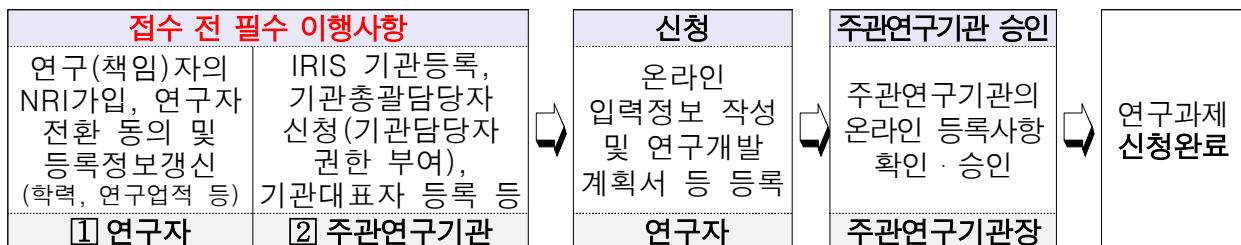
## **[2025년도 학술연구혁신지원사업 공통사항 적용]**

-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동일 사업 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공동연구원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 수행제한 사항 미적용

###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http://www.iris.go.kr))에 접속/로그인  
→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등록 → 주관연구기관 확인 · 승인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용에 따라 기존 한국연구자정보(KRI) 내 등록된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https://nri.iris.go.kr>)으로 이관 필수(별첨 매뉴얼 1-2.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메뉴얼 참고)

#### □ 접수 시 유의사항

-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 승인” 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함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오류 발생 시 별도의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신청 후 원본 다운로드, PDF 변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필수 확인
- 접수 마감 이후 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과제 수행이 불가한 경우 선정 이후 선정 포기 신청

## 2 신청 기간 및 제출사항

### □ 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및 접수	2025.5.19(월) 9:00:00 ~ 2025.5.28(수) 18:00:00
주관연구기관 검토 및 승인	2025.5.19(월) 9:00:00 ~ 2025.5.30(금) 18:00:00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자 신청 마감시각 전까지 반드시 “제출” 처리 하여야 함.
- ▶ ② 주관연구기관 승인 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 승인” 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과제로 인정  
- 따라서, 신청자는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 바람(주관연구기관 문의)
- ▶ 신청자와 주관연구기관은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예상되는 신청 폭주를 감안하여 사전(접수 마감일 1일전 등)에 신청 및 승인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해당 기간 내에 신청 및 승인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별도 구제 절차는 없음

### □ 제출사항(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매뉴얼은 접수 전 별도 사업 홈페이지 공지

- (1단계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정보, 연구비 내역, 주요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 (2단계 : 제출서류 업로드)
  - 연구계획서 분량 초과 시 초과 분량에 대한 평가 미실시 등 평가 불이익 가능/ 표지·참고문헌·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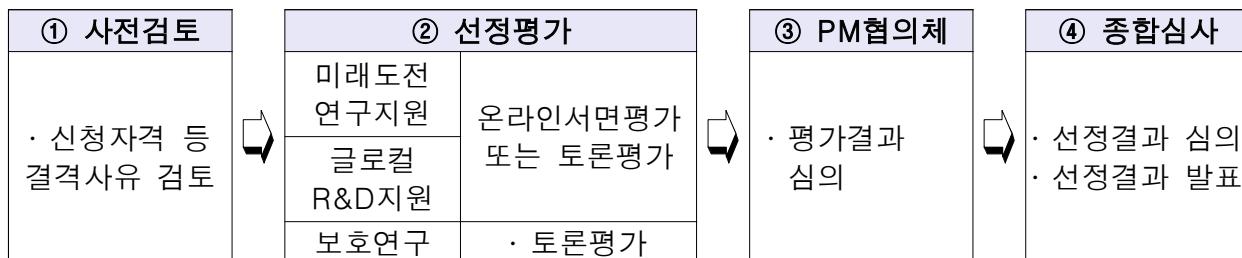
제출서류 목록	비고
①연구개발계획서(10페이지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각 5건 이내)</li><li>※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개인별 5개 이내로 작성</li><li>※ 보호연구 단독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 실적(5건 이내) 제출</li><li>※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li></ul>
②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내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는 페이지 분량 제한에 미포함)

※ 대표연구실적 작성 최대 건수를 초과할 경우, 첨부파일 내 작성 순서대로 5개만 인정됨

## 1 평가절차 및 방법

### □ 평가절차 및 방법



### □ 가점제도 운영

- 교육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연구성과\* 창출자가 연구책임자로 과제 신청 시 선정평가 점수의 3% 가점 부여(최근 3년('22~'24년) 선정 건에 한함)
  -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 2

### 평가항목 및 내용

※ 향후 세부 평가계획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 미래도전연구지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역량(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연구경력 등 역량이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li> <li>- 융합적·도전적·창의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li> </ul>
연구내용의 융합성, 도전성 및 창의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된 연구가 융합적이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가?</li> <li>- 연구주제와 내용이 선도적인 영역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며, 학문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가?</li> <li>- 연구주제와 내용이 이공분야 내의 융합적 연구 필요성이 높은가?</li> <li>- 연구내용과 연구수행 계획은 타당하고 우수한가?</li> <li>-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방법론을 혁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li> <li>- 학문후속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li> </ul>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의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크고 질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li> <li>- 연구수행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성이 기대될 수 있는가?</li> </ul>

## 글로컬R&D지원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연구경력 등 역량이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li><li>- 창의적·혁신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li><li>- 제안된 연구가 창의적이며 혁신적인가?</li><li>- 연구주제와 내용이 지역발전과 혁신을 선도할 수 있거나 연관성이 높은가?</li><li>- 연구내용과 연구수행 계획은 타당하고 우수한가? ※ 국제 협력연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함께 평가</li><li>- 학문후속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li></ul>
연구내용의 창의성 및 혁신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수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의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크고 글로벌 수준의 우수성이 기대되는가?</li><li>- 연구수행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될 수 있는가?</li></ul>
연수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수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의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크고 글로벌 수준의 우수성이 기대되는가?</li><li>- 연구수행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대될 수 있는가?</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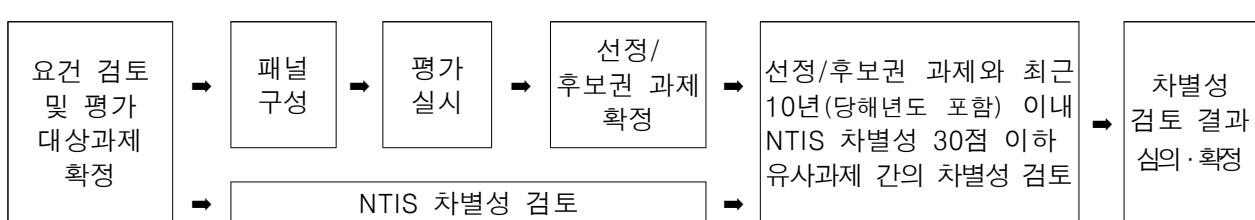
## 보호연구

평가 항목	평가 내용
연구책임자(또는 공동연구원)의 역량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책임자의 연구경력 등 역량이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공동연구 해당 시 공동연구원 포함)</li><li>- 보호분야의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공동연구 해당 시)</li></ul>
보호연구 적합성 및 연구내용의 우수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주제와 내용이 학문의 다양성 보호와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연구 과제로 적합하고 지원 필요성이 높은가?</li><li>- 보호연구로서 연구내용과 연구수행 계획은 우수한가?</li><li>- 학문후속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li></ul>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구수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가 보호학문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li><li>- 연구수행을 통해 학문의 다양성 보호와 균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li></ul>

### 3 차별성 검토

#### □ NTIS 차별성 검토

-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시)전문가 활용한 차별성 검토
  -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 □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교육부/과기정통부 최초 신규접수된 연구계획서와 차별성 검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 검토절차 : NTIS 차별성 검토 절차 준용

※ IRIS 과제 차별성 검토기능에 따라 신청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여부 및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 관련규정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따름
- 매년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평가방법 등은 변경 가능

1

### 미래도전연구지원 계속 및 종료과제 관리

### □ 연차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전 30일 이내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 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단계평가

- 보고서 제출 : 단계 연구기간 종료 전 45일 이내 제출
- 단계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연구비·연구기간 조정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세부 평가계획은 추후 수립 예정)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최종평가

- 보고서 제출 : 연구 종료 후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대상은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공개용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 세부 평가계획은 추후 수립 예정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2 글로벌R&D지원 계속 및 종료과제 관리

### □ 연차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전 30일 이내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최종평가

- 보고서 제출 : 연구 종료 후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 최종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공개용 최종보고서 제출
  - ※ 글로벌 공동연구 수행 시 “글로벌 공동연구 성과물 유형” 중 1개 이상을 최종보고서에 기재
- 점검내용 : 계획서 대비 연구실적, 연구수행의 성실성 및 연구방법·과정의 적절성, 연구과제의 융합성·창의성·변혁성 달성을 정도, 융합연구 성과 수준
- 평가방식 : 온라인서면평가 또는 토론평가
  - ※ 추후 최종평가 계획 수립 시 평가 지표 등 세부사항 확정 예정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3 보호연구 계속 및 종료과제 관리

### □ 연차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전 30일 이내 제출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 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단계평가

- 보고서 제출: 단계 연구기간 종료 전 45일 이내 제출
- 단계평가 : 당초 연구계획 대비 기 수행 연구기간의 실적 및 향후 연구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단계 연구비·연구기간 조정 및 계속지원 여부 결정

- 평가 방식 : 토론 평가
  - ※ 추후 단계평가 계획 수립 시 평가 지표 등 세부사항 확정 예정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 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최종평가

- 보고서 제출 : 연구 종료 후 6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 ※ 최종평가 대상은 평가 후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공개용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 대상 : 보호연구 연평균 연구비 1억원 초과 과제(중단 및 조기종료 과제 포함)
- 평가 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내용 및 과정,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을 정도,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 평가 방식 : 토론평가
  - ※ 추후 최종평가 계획 수립 시 평가 지표 등 세부사항 확정 예정
- 연구수행 성과입력: 연구종료 후 5년까지 매년 단위로 학위배출인력, 논문발표 실적 등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4 과제 관리 사항

### □ 과제 관리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신분변동<sup>\*</sup>이 발생한 경우 계속 지원 가능
  -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대학)으로의 신분 변동에 한함
-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가하며, 공동연구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sup>\*</sup>에 한해 특별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과제 중단의 정당한 사유(이직, 퇴직, 질병 등)에 해당하는 경우

## 5 협약해약(지원 중단) 사항

- **협약해약** : 사업의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협약 해약
- **과제중단** :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구 수행 포기 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을 요청하고 연수(연구)비 잔액 반납
  - 아래 기준 이외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연구자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액 등을 심의/확정함

구분		세부내용
신분변동	이직·취업	타 기관에 채용되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 또는 본인 희망 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인정)
	공직 등 임용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등 정무직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되는 경우
	병역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 및 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4개월 전 또는 단계 종료 4개월 전에 현재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6 과제 수행 시 안내 사항

- **연구기간 연장** :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직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허용(2년 이내)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수행 시 및 연구 종료 후 5년까지 논문 게재, 특히 등록 등의 성과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수시 입력

##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연구성과의 학술지 논문 게재 시, 해당 논문에 사사를 표기해야 함

- |   |
|---|
| ▶ 국문표기 : 본 연구성과는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과제 번호 : IRIS 시스템에서 확인)   |
| ▶ 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

## 2 국내외 파견연구 및 해외 체류 시 사전 승인

-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연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파견 시 반드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별도의 협약변경 신청 필요

## 3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함
  -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혹은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과정 중에서 직책과 계열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신청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 교육관련 문의전화 : 알파캠퍼스 학습지원센터(1588-5834)

##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 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02-737-8970))

## 5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 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

-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 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R&D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 · 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특허 등)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개인명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등록에 의한 위반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D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 지식재산권(특허 등)출원 · 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 R&D 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sup>\*</sup>를 기재하여야 함.
- \* 과제고유번호, 부처명,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6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sup>\*</sup>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청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7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 ·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화학 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한국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 8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부정 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1항의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주관기관의 자체 검증시스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9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 미신고 시설 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0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s://www.labs.go.kr>)에서 관련 자료 참고

## 11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 12 연구 윤리 관련 사항

-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하는 경우 ‘부실 학회·학술지 체크리스트’를 통한 주관 기관 점검 후 추진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와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는 불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즉시 배제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전문기관에서는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 중단 및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 조치
  - ※ 연구수행 전 협약 체결 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연구과제를 중단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하여 협약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게 됨’을 명시

## 13 적용 법령

- 신청요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사항에 따라 『학술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적용함

**불임1****보호연구 학문분야 안내**

\* 2025년 보호연구 학문분야(12개)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에 한해 신청 가능

- 보호연구의 정의** :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학문의 균형적 발전과 다양성을 유지하고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

구분	정의
소외분야	(학문의 균형적 발전) 학문분야 중 실용학문 위주의 선호로 인해 소외되는 분야 또는 연구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분야
연구기반 취약분야	(학문의 다양성 유지) 학문분야 중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존 학문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의 과제 평가방식에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야

- 2025년 보호연구 학문분야 목록**

연번	보호연구분야	연구주제(예시)	학문단	전문분야 (코드번호)
1	차세대 확률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상적 마르코프 과정 기반의 차세대 확률 이론 및 통계 모델 정립</li> <li>· 확률적 알고리즘의 수학적 작동 원리 및 수렴성 분석</li> <li>· 확률론적 편미분방정식을 활용한 동적 확률 시스템의 해석 기법 연구</li> </ul>		확률/ 이론통계 [BA10500]
2	천부 및 심부 지질환경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저준위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적합한 심부 지질환경의 평가 및 특성화 연구</li> <li>·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을 위한 지질 매질 특성 분석 및 저장 안정성 평가</li> <li>· 지하자원 탐사 및 활용을 위한 천부·심부 지하 공간의 구조 및 물성 해석 연구</li> </ul>	자연 과학단	지구/ 지질과학 [BA30100]
3	동물생명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 악취저감, 지속 가능한 사육 방식 도입 등 친환경적인 축산업의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사육 방식 도입 등 친환경적인 축산업의 기반 구축</li> </ul>		동물자원학 [BH30400]
4	수산생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어업자원에 대한 과학적 어업자원조사 체계 및 빅 데이터 구축</li> </ul>	생명 과학단	수산학 [BH30600]
5	나병(leprosy)의 병리기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병의 진행에 대한 인체조직의 반응기전 연구</li> </ul>	의약학단	감염의학 [BM10200]

연번	보호연구분야	연구주제(예시)	학문단	전문분야 [코드번호]
6	한의이론 기반 한의치료 처방구성 원리의 과학적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의 진단 이론(변증, 체질 등)에 따라 환자 맞춤형 한약처방 또는 침처방의 과학적 근거 및 기전을 제시하는 연구</li> <li>· 한약 또는 경혈 조합에 따른 상호작용, 상승효과, 개인 맞춤의학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li> <li>· 한의진단(설진, 복진, 맥진 등) 기술과 한의진단(변증 등)을 연계하고 객관화하여 한의 처방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li> </ul>		기초한의학 [BM40100]
7	계측제어시스템 수학적 모델링 및 해석 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시스템 수학적 모델링 및 제어계측 알고리즘 설계</li> <li>· 대규모언어모델(LLM)의 수학적 모델링, 해석 및 제어</li> </ul>		자동화계측 [BD10500]
8	노후 사회 인프라 시설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실용 비파괴 진단 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사회 인프라의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 추정 신뢰도 향상</li> <li>· 노후 인프라에 대한 실용적 비파괴 진단 기법의 정확도 개선</li> <li>·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방법 보정 및 신뢰도 향상</li> </ul>		토목구조/시공 /재료공학 [BD20800]
9	금속 섬유 강화 기능성 복합소재 (Metallic fiber reinforced composites for functional applic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 섬유 강화 전자기 또는 방사선 차폐용 복합소재</li> <li>· 금속 섬유 강화 고기능 건축용 복합소재 또는 국방용 복합소재</li> </ul>	공학단	나노융복합 소재 [BD30500]
10	결정화 공정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능성 복합결정화 설계 및 공정 기술</li> <li>· 조립인자 설계 및 분리 정제 기술</li> </ul>		화학공정 [BD40100]
11	AI를 이용한 안전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인지(context-aware)기반 산업안전 위험 요인 감지 기술 개발</li> <li>· 중소규모 기업용 위험요소 발견 및 대책 제시용 인공지능 핫봇 개발</li> <li>· 의료서비스와 같은 복잡한 사회-기술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인적오류 모델링 및 평가 기술 개발</li> <li>·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AI 돌봄 로봇 및 치안 디바이스 설계 및 적용</li> <li>· 노년층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인터랙션 연구</li> </ul>	ICT · 융합 연구단	산업공학 [BE80100]
12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주거환경 시스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거주성 향상 및 지원적 주거 환경 시스템 구축</li> </ul>		생활과학 [BE80600]

## 1 기본사항

## &lt;신청자격 및 참여 제한 사항&gt;

**1. 학술연구혁신지원사업은 3책 5공의 적용을 받습니까?**

- ☞ 3책 5공이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3책 5공) 임을 뜻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 과제수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학술연구혁신지원사업의 모든 과제는 3책 5공 대상과제에 포함됩니다.
- ☞ (글로컬R&D지원) 글로벌 공동연구를 수행하더라도 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 따른 4책 6공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인 1과제 수행 제한이 무슨 뜻입니까? 현재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학술연구혁신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 1인 1과제 수행 제한이란, 연구책임자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 과제를 1개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과기정통부 소관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기간이 신청하고자하는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5.9.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 공동연구원의 경우 개인단위 기초연구사업 1인 1과제 수행 제한 사항이 미적용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에 의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해당 참여 제한 조치가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또한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연구책임자는 지원자격 상실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4.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속 한국인도 신청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까?

- ▶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의 신청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며 참여연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5. 연구책임자와 소속 대학이 다른 연구자도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 공동연구원 자격을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 개발기관으로 전액 지급되어 관리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기간을 종료하고 연구개시일부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기간과 연구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7.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연구개시일 이전에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 과제 협약이 가능한가요?

-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접수마감일 및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 8. (글로컬 R&D지원) 지역대학<sup>\*</sup>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 지역대학은 소속기관의 소재지<sup>\*</sup>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소속기관은 지역대학이어야 합니다.

\* IRIS 등록 정보 기준

#### <연구분야 및 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 9. 이공학분야(이공계 과학기술 전 분야)에는 어떤 학문분야가 해당되나요?

- ▶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RB)’를 기준으로 평가 학문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 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eview Board) 분야 분류표<sup>\*</sup>’를 확인하여 본인의 신청 과제와 가장 적합한 학문분야를 표에서 확인하고, 과제 신청 시 해당 학문분야를 정확하게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 사업 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전문위원분야분류에서 확인 가능

## 10. (미래도전연구지원 사업) 신청과제의 학문분야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 ☞ 미래도전연구지원은 이공분야 내 다양한 분야간 협력연구(2인 공동)를 지원 하므로, 반드시 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은 반드시 異種 학문분야(재단 CRB분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 이에 따라 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 지정 시, 반드시 2개의 RB세부분야(서로 다른 CRB분야이어야 함)를 선택하고 가중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가중치의 합은 100으로 맞추고, 1순위 분야(연구책임자 분야)의 가중치는 최소 51 이상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11. (보호연구 사업) 신청과제의 평가학문분야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 보호분야(12개)에는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기초연구 평가전문분야(RB분야)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보호분야 관련 전문분야(RB분야)를 참고하시어 하위의 RB세부분야 중에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1. 보호연구 학문분야 안내 참고, p.23)

## 12. (보호연구 사업) 연구과제의 주제가 보호분야(12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5년 보호연구 신규과제는 학문분야별로 사전에 지정 하여 공고된 보호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의 연구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분야의 연구과제는 분야 제한이 없는 사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기존에 수행한 연구주제 및 타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한 연구주제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까? 타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 기존에 수행한 연구와 100% 동일한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과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된 과제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복성이 우려될 경우 연구자가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하여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과제 유사도가 70%가 넘는 유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 학문단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차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 타 기초연구사업에 신규로 신청한 연구와 100% 동일한 연구주제 및 내용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과제는 타 기초연구사업 신청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중복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된 과제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2025년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의 신규사업 신청 시 동일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 연구책임자 본인이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탈락된 경우 교육부 기초연구사업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5. 연구계획서를 영문으로 작성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 신청양식에 영문으로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 까지 모두 서명해야하나요?**

-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 참여연구자로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인 경우에도 학생연구자의 연구 수행 기여도 인정 및 보상을 위해 참여 과제에 참여연구자 등록 필요)

**<과제수행 관련>**

**17.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에 미부합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원이 이직 시, 연구의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까?**

- ☞ 불가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대학)으로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계속 수행이 가능합니다.
- ☞ 글로컬R&D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대학으로 이직 및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계속 수행 가능하나 지역대학이 아닌 타기관(예 : 지역 대학→공공·민간연구소 또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직의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 계속 수행 불가능합니다.

**18. 과제 수행 중 6개월 이상 국내 외 파견연구 신청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나요?**

- ☞ 연구책임자는 최소 1개월 전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에 연구계획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 과제 수행 중 6개월 미만의 국내 외 파견 승인은 연구수행의 필요성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자체 승인으로 진행합니다.

## <연구비 계상 관련>

### 19. 연구비와 연구기간은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 정부 회계년도 일치 방침에 따라, 2025년도에 시작하는 1차년도의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6개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에 따른 연차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미래도전연구지원

미래도전 연구지원	1단계			2단계		
	1차년도 (‘25년)	2차년도 (‘26년)	3차년도 (‘27년)	1차년도 (‘28년)	2차년도 (‘29년)	3차년도 (‘30년)
연구기간	‘25.9.1 ~ ‘26.2.28 (6개월)	‘26.3.1 ~ ‘27.2.28 (12개월)	‘27.3.1 ~ ‘28.2.29 (12개월)	‘28.3.1 ~ ‘29.2.28 (12개월)	‘29.3.1 ~ ‘30.2.28 (12개월)	‘30.3.1 ~ ‘30.8.31 (6개월)
연구비	1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100백만원

#### ○ 글로컬R&D지원

글로컬 R&D지원	1차년도 (‘25년)	2차년도 (‘26년)	3차년도 (‘27년)	4차년도 (‘28년)
연구기간	‘25.9.1 ~ ‘26.2.28 (6개월)	‘26.3.1 ~ ‘27.2.28 (12개월)	‘27.3.1 ~ ‘28.2.29 (12개월)	‘28.3.1 ~ ‘28.8.31 (6개월)
연구비	90백만원	180백만원	180백만원	90백만원
(신청 시 추가지급) 글로벌 공동연구비	25백만원	50백만원	50백만원	25백만원

#### ○ 보호연구

보호연구	1단계			2단계		
	1차년도 (‘25년)	2차년도 (‘26년)	3차년도 (‘27년)	1차년도 (‘28년)	2차년도 (‘29년)	3차년도 (‘30년)
공동	연구 기간	‘25.9.1 ~ ‘26.2.28 (6개월)	‘26.3.1 ~ ‘27.2.28 (12개월)	‘27.3.1 ~ ‘28.2.29 (12개월)	‘28.3.1 ~ ‘29.2.28 (12개월)	‘29.3.1 ~ ‘30.2.28 (12개월)
	연구 비	150백만원	300백만원	300백만원	300백만원	150백만원
단독	연구 기간	‘25.9.1 ~ ‘26.2.28 (6개월)	‘26.3.1 ~ ‘27.2.28 (12개월)	‘27.3.1 ~ ‘28.2.29 (12개월)	‘28.3.1 ~ ‘29.2.28 (12개월)	‘29.3.1 ~ ‘30.2.28 (12개월)
	연구 비	5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50백만원

### 20. (글로컬R&D지원사업) 글로벌 연구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 글로벌 연구를 통해 글로벌 연구비를 추가 지원 받더라도 반드시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접수 시 계상하지 않으며, 과제 선정 및 협약 이후 계상을 원하는 연구자에 한하여 IRIS 협약변경 신청을 통한 승인을 득한 후 계상·집행 가능합니다.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일반적인 국외출장비 등이 아닌 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 안식년(연구년) 등 파견 비용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집행 불가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을 위한 IRIS 승인성 협약변경 신청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및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제출 필요

## 21. 연구비 계상 시에 주의사항이 있나요?

- ☞ 학문후속세대 인건비로 학부생, 대학원생(석·박사과정생) 또는 박사후연구원 고용(예정포함) 인건비를 반드시 당해연도 연구비(간접비 포함, (해당 시) 글로벌 공동연구비 미포함)의 20% 이상을 책정해야 합니다.

## 22.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합니까?

-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부 계상/집행에 관한사항은 함께 공지되는『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및 주관연구기관에 비치된『연구비 관리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의는 1차적으로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에 하시고, 기타 세부적인 연구비계상/집행기준에 관한 문의는 연구정산총괄팀(042-869-7788)으로 하십시오.

\* 재단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사업자료실 → 사업관리 규정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 및 [연구개발비 정산 길라잡이] 공지

## <과제접수 유의사항>

## 23. 접수기간(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 ☞ 신청기간과 절차는 모든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 과제에 대해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 24. 첨부파일 제출 전 · 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 ☞ ① 손상된 파일, 암호화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한글 전용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PDF변환에 실패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IRIS로 접수 시 업로드 파일 전체 용량이 2GB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십시오.

② 또한 접수 마감 이후 잘못 등록한 파일은 추가 접수 및 교체가 되지 않으므로, 각 첨부파일 항목에 맞게 해당 파일이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PDF 변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사항**

1. 파일명은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며, 자소분리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다.
2. 연구계획서는 권장 폰트로 작성한다.(제목-HY헤드라인M, 본문-휴먼명조, 표-맑은고딕)
3. 파일에 DRM을 적용하거나 암호화하지 않는다.
4. 파일을 업로드하기 전에 읽기, 저장, 미리보기,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5.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불러와서 작성하는 경우 UTF-8로 인코딩한다.
6. 한글파일을 배포용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7. Word 파일의 경우, 문서 내 표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한다.
8. 문서에 인쇄제한, 제한된 보기 설정을 하지 않는다.

## 2 IRIS 관련 사항

###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 ☞ IRIS는 한국연구재단의 e-R&D와 같은 역할을 하고,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은 기존의 한국연구자정보(KRI)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IRIS 회원가입부터 연구자전환 등의 및 NRI 연구자 정보 등을 미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IRIS를 통한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의 대표자가 필수 입력 정보이기 때문에 주관연구기관 총괄담당자가 대표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방법이 궁금합니다.

- ☞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은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연구자번호 신규 발급 및 연구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매뉴얼)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회원가입 → ② 연구자정보 전환 →
    - ③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관련 문의처 ☎1877-2041
- ※ 실명인증 불가 연구자(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외국인 또는 해외체류 내국인)는 IRIS 회원가입 불가  
※ 기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진행하는 연구자번호 발급·조회·수정 서비스는 2021.8.22. 부로 종료

### 3. 대학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을 산학협력단이 아닌 '대학'으로 신청하기를 권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IRIS 과제 신청 시에도 연구책임자의 NRI 소속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대학'으로 기관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과제신청을 진행·완료할 수 없으므로 기관총괄담당자는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에 기관정보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수 마감 기간이 임박하여 기관정보를 '대학'으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경우 '산학 협력단'으로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4.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된 동일인을 대학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까?

- ❶ 중복지정이 불가합니다. 한 명의 NRI 소속기관은 다수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과 NRI 소속기관이 동일한 인력만 해당 기관의 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기관정보를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2명의 대표자(예: A대학 홍OO, A대학산학협력단 김OO)와 2명의 기관총괄담당자(예: A대학 이OO, A대학산학협력단 박OO)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기관총괄담당자가 아닌 기관담당자는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정보가 일치하는 담당자에게만 기관담당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 승인권한 부분은 다음 FAQ 참고

5. 주관연구기관을 대학으로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과제 접수 및 협약 등 절차를 진행할 때 NRI 소속기관이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인 직원이 과제관리(검토·승인 등)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 ❷ 네. 그렇습니다. NRI 소속기관 정보가 'A대학'이 아닌 'A대학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인력은 'A대학 산학협력단'의 기관담당자 권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IS에서 별도 조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A대학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는 'A대학 산학협력단' 뿐만 아니라 'A대학'의 과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단, 반대로 'A대학' 기관담당자에게는 주관연구기관을 'A대학'으로 신청한 과제의 접수 및 협약 등에 필요한 기관 승인권한만 부여되며, 'A대학 산학협력단' 과제에 대해서는 승인권한이 없습니다.

6.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중 어디로 해야 합니까?

- ❸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므로,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는 한국연구재단 담당부서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IRIS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 관련 문의는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게시판(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